

# 부부공동 명의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 하에 전매제한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 일정과 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중도금 대출 이전에 부부공동 명의 변경을 희망하시는 계약자께서는 해당 지정기간 내에 방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일시 및 접수장소

| 일시                                     | 접수장소  | 유의사항  |
|--|---|---|
| 2023.10.10 ~ 10.12<br>(오전 10시 ~ 오후 4시) |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br>(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8) | 원활한 진행을 위해 <b>사전 예약제</b> 로 진행하오니, 방문 전 반드시 ☎ 031-443-1957(견본주택)으로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br><b>(미예약세대 및 당일예약 세대는 진행이 불가합니다.)</b> |

##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절차 안내

| 절차                       | 장소                                | 장소   |
|--------------------------|-----------------------------------|--|
| 01 증여 계약 체결              | 직접작성<br>(계약서 양식 광명시청 민원토지과 비치)    | * 양도, 양수인 간의 증여계약서 작성<br>* 전용면적, 대지면적, 거래지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b>必</b>                                     |
| 02 증여계약 검인               | 광명시청 1층 민원토지과<br>(☎ 02-2680-2759) | * 광명시청 민원토지과에서 증여계약서 검인도장 득<br>* 대상자 : 양도인 및 양수인<br>*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 03 명의변경 진행 예약            | 견본주택                              | * ☎ 031-443-1957(견본주택) 명의변경 사전 예약<br>*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지 않습니다.   |
| 04 명의변경 신청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   | 견본주택                              | * 신청자 : 양도인, 양수인(양도인은 대리 접수 불가, 본인 방문 필수)<br>* 명의변경 신청서 외 서류는 분양사무실에 비치<br>* 구비서류 : 하기 참조(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 05 LH 전매동의 승인            | LH<br>(사업주체 일괄 신고 예정)             | * 사업주체 → LH : 전매동의 신청 접수(3~4일 소요)<br>* LH 전매동의 승인(약 3주 소요)   |
| 06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및 분양계약서 불출 | 견본주택                              | * 수령자 : 양수인(본인, 배우자) 2명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 07 증여신고                  | 세무서 (자진신고)                        | * 당사는 증여 신고 미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분양권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 신청시 구비 서류

| 구분   | 양도인(계약자 본인)   | 양수인(배우자)   |
|------|---|--|
|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2부 / 본인발급용<br>(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br>* 신분증,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2부/본인발급용<br>(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br>* 신분증, 인감도장 |
| 기타   | * 분양계약서(아파트, 발코니확장 등 일체)<br>* 증여계약서(원본) (검인번호 <b>必</b> )<br>* 주민등록등본(상세) 2부(주민등록번호 <b>별표 불가</b> )<br>*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주민등록번호 <b>별표 불가</b> ) (분리세대 시 각 2부)                       |  |
| 기타   | * 양도인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br>* 양도인이 양수인 대리로 오는 경우는 위의 전체 서류와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추가로 첨부(용도 : 위임용)<br>* 양수인 대리로 오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 필수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br>*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신청서와 전매 동의서를 작성(양도·양수인)하여 제출, 전매 동의서에 LH의 동의를 득한 뒤 (시공사 진행) 시공사의 명의변경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양도·양수인의 사유로 인해 LH의 전매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면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